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50

발의연월일: 2021. 3. 2.

발 의 자:이철규·홍석준·김용판

정동만 · 정운천 · 엄태영

권명호 · 최형두 · 구자근

윤창현·김도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됨.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경우, 직접지 원받는 주민지원사업만으로 추진을 원해도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합의가 있으면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4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3항 중 "한다)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업자별 지원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업자의 전 체 지원금액
- 2. 지역별 지원금: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로 배분한 금액
-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
	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
	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합의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제10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	③
업자의 재원 또는 기금에서 지	
원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	
액(이하 "지원금"이라 <u>한다)의</u>	<u>한다)은</u>
결정기준은 송 · 변전설비와 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1. 사업자별 지원금: 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 사
	업자의 전체 지원금액

<u><신 설></u>	2. 지역별 지원금: 사업자별 지
	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해당
	<u>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대</u>
	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
	로 배분한 금액
<u> <신 설></u>	④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송ㆍ
	변전설비와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